[별지 제2호 서식]

○ ○ 지 방 공 소 청

수 신 **변호인 ○ ○ ○**

제 목 **변호인의 접견·교통권 행사에 대한 통지**

피의자 ○ ○ ○ 에 대한 △ △ 피의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접견·교통은 아래 사유로 부득이 진행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.

☑ 피의자가 이성적인 판단 및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함

☐ 구체적인 시간적·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·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

☐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면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

☐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

☐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음

☐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

20 . . .

검 사 ○ ○ ○ (인)